

---

#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계약전환제도특약 목차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제2조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등

제3조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제4조 전환전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5조 계약전환의 무효

제6조 준용규정

# 실손의료비보장보험 계약전환제도특약 약관

##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 ①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하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이하 '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
  2. 전환전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전환후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전환일 이전 최대 5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계약
- ② 제 1항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제2조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등]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

## 제3조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전환후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 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 2항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 [전환전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3조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 보통약관 "제 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또는 "제 7장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은 전환후계약의 최대 재가입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제5조 [계약전환의 무효]

전환후계약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날부터 제 3조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1.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다만, 동 조항에 따른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합니다)
2.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 제 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3. 회사가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